

### 해외 주식 매각과 세금

**Q** 몇년전에 중국 현지 법인에 지분참여 하였는데 그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5% 세금 공제하고 국내로 송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국내에서의 세금등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국내에서의 세금 종류 및 신고납부 기한

질의2) 국내에서 다른 소득이있는경우 합산 여부

질의3) 국내에서 신고납부시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여부

**A**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국내양도소득과 동일합니다.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발관련

**Q** 외주업체로 생산이관한 신규아이템 생산과정에서 초기에 재료비과다, 불량발생,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등으로 외주업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당사가 잘 지침을 내리고 콘트롤 못한 책임으로 외주업체에 개발손실비용 명목으로 추가외주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경상연구개발비? 외주가공비? 잡손실..

**A** 개발과정에서의 지침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배상성격의 금액이라면 연구비보다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 차량 매각시 부가세 관련 문의

**Q** 당사는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스타렉스를 2019년 1월 22에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헌데 회사 사정상 구입했던 스타렉스를 당월(2020년 11월)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초 매입시 부가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토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법인의 업무용승용차(화물포함) 중 개별소비세 과세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이 경과 전에 다시 매각할 경우 최초 공제 받은 부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요? (관련조항이 있는지요?)
2. 부가세를 반환 또는 불공제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회사에서 보유해야하는지요?

매입세액공제받은 승합차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해당 승합차를 면세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일부 반환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귀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 관련 매입자납부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회사는 10.30일 A사에 스크랩(철부산물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받은 A사는 공급받은 스크랩 대금을 다음월인 11.10일 입금하였습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그렇다면 공급받은 A사는 10.30부터 입금한 11.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0.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 2) 더불어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입금받은 날인 11.10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지않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인가요?

A 1. 부가가치세 지연입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금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